

의안번호	제 717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
결산 승인의 건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1년 5월 31일

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7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5. 31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2020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예산 집행 결과인 세입·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과
- 기금·채권·채무·공유재산·물품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·세출 결산 총괄

- 세입결산액: 3,028,602백만원
- 세출결산액: 2,859,693백만원
- 세계잉여금: 168,909백만원으로
·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72,805백만원을 제외한
- 순세계잉여금은 96,104백만원임.

나.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

- 전년도말 현재액: 153,000백만원
- 당해년도 조성액: 40,943백만원
- 당해년도 사용액: 0백만원
- 당해년도말 현재액: 193,943백만원

다. 채권·채무액

- 채권: 45,260백만원, 채무: 85,801백만원

라.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

- 공유재산: 5,957,576백만원, 물품: 46,437백만원

3. 의안전문: “별도 송부”

-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서
-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재무제표
-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개요
-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
-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
-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

4. 참고자료: “별도 송부”

-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
-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

5. 관계법령 발취: 붙임

- 지방자치법 제134조(결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(결산승인)
- 지방회계법 제14조(결산의 수행)
-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(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) 및 제62조(물품의 현황 작성 등)

□ **지방자치법 제134조(결산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**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(결산승인)**

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□ **지방회계법 제14조(결산의 수행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"감사위원"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(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(물품의 현황 작성 등)**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